

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의8서식] <신설 2018. 10. 18.>

##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(변경)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시	처리기간	지정 20일 변경 5일
신청인	상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	사업자등록번호 229-83-00074		
	성명 신용승	생년월일 1964.10.03		
	주소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30	전화번호 02-570-3140	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	
지정서 재발급사유				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 및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2019년 8월 20일

신청인

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<b>신청인</b> <b>제출서류</b>	<p>1. 지정 신청의 경우</p> <p>가.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1부          나.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1부          다. 별표 6의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          라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1부.</p> <p>2. 지정 변경 신청의 경우</p> <p>가.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         나.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 원본</p>
<b>담당 공무원</b> <b>확인사항</b>	<p>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)</p> <p>2. 사업자등록증명</p>

해저전보 고동이용 도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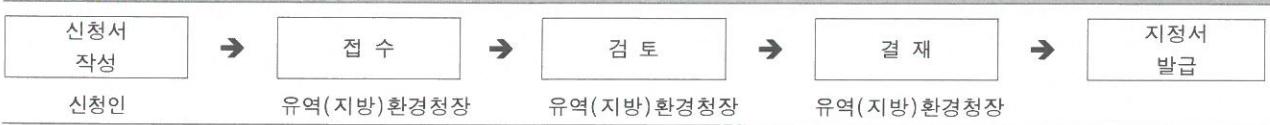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일의 담당 공무원 확인을 위하여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시청이

시용승

卷之三

처리전차



210mm×297mm(백상지 80g/m<sup>2</sup>)